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49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「주거기본법」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,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민 및 비주택 거주민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).
- 나.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8조, 제21조 등  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 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1)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,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민 및 비주택 거주민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).

-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, 제18조에 따라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), 최저기준 미달 거주민 등을 지원대상자로 추가 신설함

2)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- 주거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구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주거복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천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주거기본법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61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
**제2조(주거권)**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.

**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**제14조(주거환경의 정비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**제16조(주거약자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

**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·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21조(주거복지 전달체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·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4. 3. 25.] [국토교통부령 제1319호, 2024. 3. 25., 일부개정]

### 제41조(신혼부부 특별공급) 1. 공급요건

가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이하 같다)이 7년 이내일 것

나. 삭제 <2018. 5. 4.>

다.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. 다만,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.

## 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4. 11.] [법률 제19331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풍수해” (風水害)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
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관리

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가. 삭제 <2017. 10. 24.>

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
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
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
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4. 29.] [국토교통부령 제1123호, 2022. 4. 29., 일부개정]

제19조의2(침수 방지시설)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차수판(遮水板)
2. 역류방지 밸브